

안산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7
------------	-----

제출연월일 : 199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수구입대 인상 등에 따른 부족재원 및 시설화충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요금부과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돗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용수구입대 인상 등에 따른 부족재원 및 시설 확충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안 별표2).
※ 요금인상 조정안 : 별첨

나. 누진요금제에 따라 소비량이 많을 시 가정용보다 업무용요금이 저렴하여 현행 가정용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업무용으로 적용토록 하여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법령기준내의 안마사술소는 유흥음식점 등이 적용되는 영업용으로 적용토록 하여 타 업태와 형평성 유지코자 함(안 별표3).

다. 급수공사 신창시 현행 설계금액의 1%를 선납토록 되어 있는 설계수수료의 납부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설계 완료 후 납부토록 개정함(안 제6조 제2항).

라. 수도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 수용가 관리 급수시설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급수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일반가정과 요금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숙사도 세대구성과 관계없이 침실 (방)수로 기구분할하여 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가정용의 기구분할 수는 침실 (방)수 범위에서 적용토록 개정하여 부당 감면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29조).

바. 소화용 급수시설은 화재진압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매년 급증하는 소방업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일반회계에 부담하도록 함 (안 제37조).

사.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시 수용가가 직접구입 설치 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수용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서 직접 설치도록 개정함 (안 제41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9.4.13 ~ 99.5. 2(20일)
- 예고결과 : 이의사항 없음

물가대책심의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 : '99. 5. 12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23조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99 수도사용료 인상 조정계획
 - 경기도 지침 상하58440-548('99.2.25), 투자13380-597('98.5.16)호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및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가”를 각각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선납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9조 단서중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급수장치의 수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비용 부담분 제외) 또는 제43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지사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급수장치”를 “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 급수장치”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2항”을 “전항”으로, “손해는”을 “손해와 사고 등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안산시 상수도급수구역내”를 “당해주택”으로, “가구를 말한다”를 “가구로서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요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입종의 수도요금
2. 소화용 급수시설에 의한 수도요금 및 정액요금 전액
3. 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금 또는 수수료 등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감면한 경우에는 일반회
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에서 부담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
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이 교
체 또는 설치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업종별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8
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6조관련)

(단위:m³, 원/1m³)

업종별	구분	종량요금		비고
		사용량	요금	
가정용		0~10	170	
		11~20	200	
		20~30	250	
		30~40	310	
		41~50	380	
		51 이상	560	
업무용		0~20	270	
		21~50	280	
		51~100	300	
		101~300	330	
		301 이상	360	
영업용		0~30	400	
		31~50	460	
		51~100	600	
		101 이상	750	
육탕 1종		0~200	210	
		201~300	250	
		301~500	290	
		501 이상	330	
육탕 2종		0~500	780	
		501 이상	900	
전용 공업용		0~100	140	
		101 이상	160	

<별표 3>

업 종 의 구 분 (제27조제1항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1단계요율 적용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m' 미만의 소규모가게 ○ 양도시설, 기숙사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실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세마을금고, 농수축협중앙회 및 지사무소, 기타 사회복지 시설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대중음식점, 유홍음식점, 전문음식점, 대방, 제과점, 휴게실 등) ○ 공연장, 유기장, 노래방, 숙박업 (여인숙 제외)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도축장 ○ 제빵업, 냉동, 냉장업, 청량음료제조업, 식품가공제조업, 양조업(주정제조업), 벽돌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 제조업, 화장품제조업(단, 31m' 이상은 2단계요금 적용) ○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제외) ○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건축물준공검사 전까지)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 ○ 법령(의료법, 안마시술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형태
욕탕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기족탕업, 한증막업)
욕탕용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 ○ 법령(의료법, 안마시술에관한규칙)의 규정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에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배, 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안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u>도지사가</u>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관할구역 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 (급수구역) ----- ----- <u>시장이</u> ----- ----- -----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하고 <u>도지사가</u>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장치는 따로 정한다. 1~4호 (생략)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 ----- <u>시장이</u> ----- ----- 1~4호 (현행과 같음)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및 급수공사의 비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u>선납하여야</u>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및 급수공사의 비용) ① (생 략) ② ----- ----- <u>납부하여야</u> ----- ----- -----
제9조 (공사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9조 (공사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 ----- <u>급수 장치의 수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비용부담분 제외)</u> 또는 제43조 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 -----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생 략) ② <u>도지사는</u>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생 략) ② <u>시장은</u> ----- ----- ----- ③ (생 략)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급수장치는 배수관 분기점에서부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설치된 수도계량기까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외의 급수장치 시설은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 관리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테면히 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 ----- <u>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 급수장치</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항의</u> ----- ----- <u>손해와 사고 등에 대하여는</u> -----

현 행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단위:m³, 원/1m³)

구 분 업종별	종량요금		비 고
	사 용 량	요 금	
가 정 용	0 ~ 10	150	
	11 ~ 20	170	
	20 ~ 30	200	
	30 ~ 40	230	
	41 ~ 50	270	
	51 이 상	370	
업 무 용	0 ~ 20	230	
	21 ~ 50	240	
	51 ~ 100	260	
	101 ~ 300	290	
	301 이 상	320	
영 업 용	0 ~ 30	350	
	31 ~ 50	410	
	51 ~ 100	500	
	101 이 상	600	
욕탕용 1종	0 ~ 200	180	
	201 ~ 300	220	
	301 ~ 500	260	
	501 이 상	300	
욕탕용 2종	0 ~ 200	450	
	201 ~ 300	560	
	301 ~ 500	670	
	501 이 상	900	
전용·공업용	0 ~ 100	130	
	101 이 상	150	

개 정.(안)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단위:m³, 원/1m³)

구 분 업종별	종량요금		비 고
	사 용 량	요 금	
가 정 용	0 ~ 10	170	
	11 ~ 20	200	
	20 ~ 30	250	
	30 ~ 40	310	
	41 ~ 50	380	
	51 이 상	560	
업 무 용	0 ~ 20	270	
	21 ~ 50	280	
	51 ~ 100	300	
	101 ~ 300	330	
	301 이 상	360	
영 업 용	0 ~ 30	400	
	31 ~ 50	460	
	51 ~ 100	600	
	101 이 상	750	
욕탕용 1종	0 ~ 200	210	
	201 ~ 300	250	
	301 ~ 500	290	
	501 이 상	330	
욕탕용 2종	0 ~ 500	780	
	501 이 상	900	
전용·공업용	0 ~ 100	140	
	101 이 상	160	

현행

(별표 3)

한국어 구분표

구 분 내 용	
업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1단계요율 적용 ○ 담배, 연탄, 암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서 10m² 미만의소규모가게 ○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등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업소 ○ 사설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 금고, 농수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기타 사회복지 시설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대중음식점, 유홍음식점, 전문음식점, 다방, 제과점, 휴게실 등) ○ 공연장, 유기장, 노래방, 숙박업 (여인숙 제외)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관광업 ○ 예식장 ○ 사설 학원 ○ 사진현상소 ○ 도축장 ○ 제빙업, 냉동, 냉장업, 청량음료제조업, 식품가공제조업, 양조업(주정제조업), 벽돌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 제조업, 화장품제조업(단, 31m²이상은 2단계요율 적용) ○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제외) ○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증인 건물 : 건축물 준공검사전까지)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신내용 급수 ○ 수도권 바우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 (신설)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특탕용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특탕용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사우나탕업, 더키탕업, 복합목욕탕업) ○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암마시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한식을 포함한 육설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 육설 및 발한식, 탈의실외에 별개의 휴식장을 갖춘 암마시술소
전용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배. 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개정(안)

(별표 3)

협동의 구분표

관 계 법령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8.3, '97.8.28>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99 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안

□ 정부의 물관리 정책방향

- 물부족 해소와 맑은물 공급은 세계각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나라도 21세기초 물기근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 정부에서는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시급한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추진중에 있음
 - 2001년까지 물값을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하되 '99년도 생산원가의 80~85% 수준으로 조정 ('99.4.17 국무조정실)
 - 물값 현실화를 포함한 “수자원개발확대”를 정부시책 100대 과제로 선정 ('98.6.23 기획예산위원회)
 - 물의 과소비 방지와 신규 수자원 투자재원 마련 등 물수요관리를 위해 2001년 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물값 현실화('99.4.7 건교부 국경개혁 보고)
 - 물 소비 억제를 위해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 ('99.4.7 대통령)

□ 현행 요금수준

- 현재 공급하는 상수도요금은 98년도 적정 생산원가의 80% 수준이며
- 99년 적정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는 57%의 요금인상 필요

	현행요금	생산원가	인상요인
98 기 준	235원/톤	281원/톤	20%
99 예 상	235원/톤	369원/톤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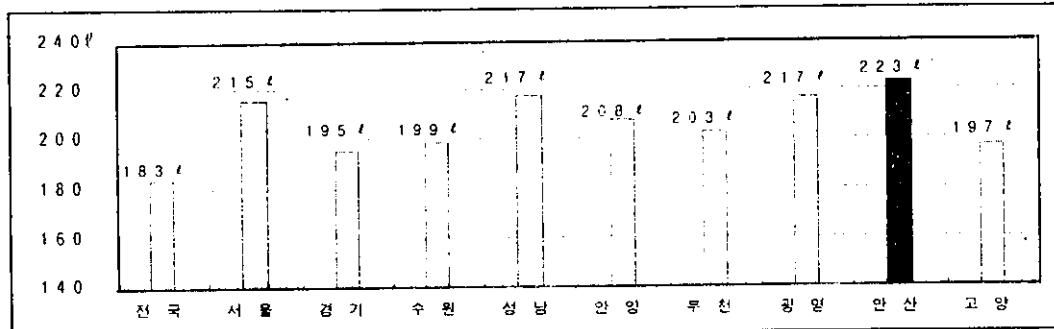
- 99년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 정수구입요금 인상계획(23.7%) 반영

□ 요금인상 필요성

1. 수돗물의 과소비 억제

- 저렴한 수도료는 물의 과소비를 발생시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와 하수량이 늘어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유발하고 용수대·동력비 등 경상비 증가로 수돗물생산원가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절수는 가정에서부터 생활화되어야 하는데 가정용 요금수준이 너무 낮아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인해 공공시설 등에서도 절수 의식이 낮음

<도시별 가정용 1인1일 급수량>



※ 자료출처 : 97 상수도통계지(환경부)

2. 투자재원 확보

- 물가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지양되어 우리시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많은 재원이 차입금과 일반회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됨으로서 향후 과다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일반회계의 재정부담 요인

<광역상수도5,6단계사업비 조달재원>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안산시부담액				타기관부담액
	소계	사업수익	기채	보조금	
168,164	108,330 (100%)	34,570 (32%)	37,645 (35%)	36,115 (33%)	59,834

-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라 농촌 자연취락마을 지역의 상수도공급이 요구되어 투자재원 추가 소요 (7개지역, 약20억원)
 - 화정동, 선부동(우산이, 대쟁이), 안산동, 월피동(양상동) 등

3. 수공 원수·정수대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 필요

-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값 현실화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원정수요금이 매년 대폭 인상되어 부족재원 마련이 불가피

<요금인상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	비 고
수자원공사	20% (1,550백만원/년)	24.7% (3,031백만원/년)	19.7% (2,640백만원/년)	총 추가부담 7,221백만원
안 산 시		9.0% (2,036백만원/년)		총 추가세입 2,036백만원

※ 90.하반기 수자원공사 용수대 인상계획 : 23.7%(년간 4,044백만원 추가부담)

-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전력요금 및 약품비 등 경상비가 증가되어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 증가율(전년평균 대비)
 '91~'96평균 6.0%, 97년도 4.5%, 98년 7.5%

4. 타시군과의 요금 형평성 유지

- 그동안 우리시는 누수방지 및 기구축소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원가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 수도요금이 저렴하여 수돗물의 절수의식이 낮은 편으로 타시군과의 요금 형평성에 문제점 발생

<'98년도 인근도시와의 요금비교>

구 분	안 산	도평균	수 원	성 남	안 양	부 천	고 양
요금 수준	평균단가 (톤/원)	234.6	286.0	295.6	321.9	300.7	280.2
	우리시와 요금차이		22%	26%	37%	28%	17%
급수 현황	1일급수량 (천톤)	326	2,600	263	304	180	262
	누 수 율	8.2%	18.2%	18.0%	16.8%	16.6%	19.3%
							10.1%

※ 98.12월말 통계(각시군 99년도 요금인상계획분 미포함)

□ 99년도 요금인상계획

- 인상시기 : 99년 8월 고지분 부터
- 인상금액 : 35.1원/톤(234.6원/톤 → 269.7원/톤)
- 인상율 : 15.0%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0.05%)
- 추가세입 : 3,828백만원/년
- 업종별 인상방향

구분	누진단계	요율(원/m ³)		인상 단가	%	비 고
		현 행	조정안			
가정용	평균	172.7	206.3	33.6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이 가장 저렴하고 수돗물 절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균 인상을 이상 인상 ○ 20톤이하 영세서민의 사용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1톤이상 요금은 소비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을 높게 책정
	0~10	150	170	20		
	11~20	170	200	30		
	20~30	200	250	50		
	31~40	230	310	80		
	41~50	270	380	110		
	51이상	370	560	190		
업무용	평균	306.3	346.4	40.1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균 인상을 이하로 인상
	0~20	230	270	40		
	21~50	240	280	40		
	51~100	260	300	40		
	101~300	290	330	40		
	301 이상	320	360	40		
영업용	평균	467.7	550.6	82.9	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다소비, 사치성업소의 수돗물 절약과 절수형기기 등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균 인상을보다 높게 인상
	0~30	350	400	50		
	31~50	410	460	50		
	51~100	500	600	100		
	101 이상	600	750	150		
목탕 1종	평균	276.3	306.6	30.3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생활 안정과 목욕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인상을 이하로 인상
	0~200	180	210	30		
	201~300	220	250	30		
	301~500	260	290	30		
	501 이상	300	330	30		
목탕 2종	평균	789.1	861.4	72.2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음식점, 유기장 등과의 사치성 구분이 모호하고 영업용과의 요금격차가 심해 인상을 적정하게 조정 ○ 현행 사용되지 않는 누진단계를 통합하여 요금조정
	0~200	450				
	201~300	560	780	56		
	301~500	670				
	501 이상	900	900			
전용 중업용	평균	150.8	160.9	10.1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평균 인상을 보다 낮게 책정
	0~100	130	140	10		
	101 이상	150	160	10		

※ 98 도 평균요금대비 우리시 인상된 99년요금수준 : 94%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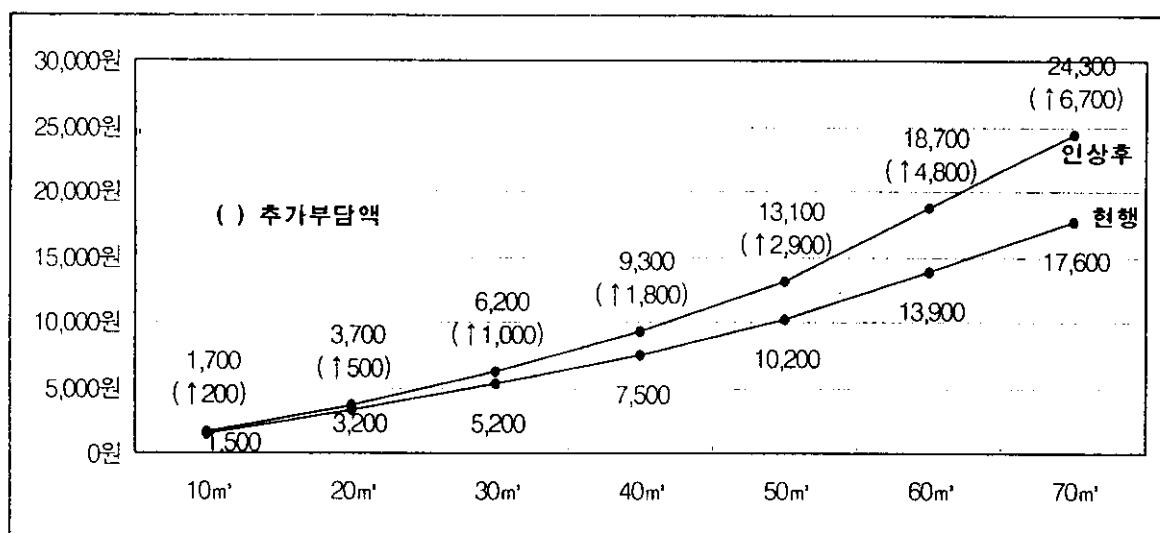
□ 인상후 수용가 월 추가부담(가정용)

(단위:원)

구 분	가구당(전당) 평균 사용량	현 행 월납부액	인 상 후 월납부액	월 추가부담		비 고
				금액	%	
가정용	최 소	10톤	1,500	1,700	200	13.3
	평 균	21톤	3,400	3,950	550	16.2
	최 대	100톤	28,700	41,100	12,400	43.2

* 평균이하 사용할 때 인상을에 비하여 요금부담이 적어 체감율은 거의 없음

< 가정용 사용량별 요금부담률 >



'98년 타시군 상수도 현황

구 분	년간생산량 (천톤)	년간부과량 (천톤)	유수율 (%)	평균단가 (원/톤)	비 고
경기도 평균	960,563	785,661	81.8	286.0	
시 평균	918,746	754,111	82.1	282.6	
수원시	96,184	78,887	82.0	295.6	
성남시	110,933	92,302	83.2	321.9	
의정부시	38,146	26,676	69.9	300.7	
안양시	65,669	54,769	83.4	293.2	
부천시	95,501	77,047	80.7	280.2	
광명시	38,590	30,250	78.4	246.7	
평택시	38,207	26,743	70.0	350.3	
동두천시	13,856	10,680	77.1	285.6	
안산시	118,820	109,068	91.8	234.6	
고양시	69,990	62,951	89.9	275.5	
과천시	8,239	7,032	85.4	216.4	
구리시	21,574	14,956	69.3	321.4	
남양주시	27,595	19,285	69.9	261.6	
오산시	10,198	8,259	81.0	302.9	
시흥시	45,622	37,639	82.5	245.3	
군포시	26,670	24,270	91.0	242.8	
의왕시	10,294	9,457	91.9	277.4	
하남시	11,138	9,482	85.1	316.9	
용인시	31,311	24,511	78.3	296.1	
파주시	15,235	11,274	74.0	394.4	
이천시	8,801	6,544	74.4	252.8	
안성시	7,209	6,054	84.0	309.2	
김포시	8,964	5,975	66.7	293.9	
군평균	41,817	31,550	75.4	367.7	
양주군	5,615	4,218	75.1	390.2	
여주군	3,876	3,028	78.1	325.6	
화성군	5,975	4,531	75.8	336.6	
광주군	5,993	4,672	78.0	383.8	
연천군	5,782	4,279	74.0	481.4	
포천군	7,645	5,445	71.2	329.7	
가평군	4,015	3,292	82.0	369.4	
양평군	2,916	2,085	71.5	278.2	